

4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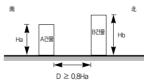
Q: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9호의 신고대 상가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하 여야 하는지?

A: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설건축물은 "건축행위"가 아니라 "축조행위"에 해당하 므로 법 제19조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'건축물의 건축등"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* '건축법식보개정 번류 제7511章 : 2005 5 2 원

- 건축사가 석계하여야 하는 건축묵(제19조제1학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
- 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
- •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•철도·고속도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, 일반국 도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
- •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독주택
-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

Q: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 가목에서 2동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남쪽건물 이 14층(A동), 북쪽건물이 15층(B동)으로 높 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격거리 산정은?

A: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,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채공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 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이상으로 하 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, 이에 대한 적용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0.8배 이상으로 이격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9호의 신 고대상가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지 아 하는 것임.



Q : 의과대학(교육연구 및 복지시설)의 부속병원 의 용도는?

A: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2 조제함 제14호 리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구 부속용도이며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건 축물의 용도는 그 부속용도에 대한 주된 용도로 분류 하는 것인 바,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(학교)인 의과대학에 부수시설로 설 치되는 부속병원이 관련법령(대학설립 · 운영규정 등)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건축법시행 명 제2조제(함 제14호 리목의 규정에 따라 학교/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이므로 부속병원의 용도 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것이나 개별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건축허가 권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 · 판단하여야 할 것인.

- ※ 부속용도의 정의(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호)
-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용도
- 건축물의 설비·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
 시설의 용도
- 사무·작업·집회·물품저장·주차 기타 이와 유
 사한 시설의 용도
- 구내식당·구내탁아소·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
 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 설의 용도
-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
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

Q: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다른 용도와 복 함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흡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, 15층의 오피스텔 건축물에서 15층 부분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선의 차리는?

A: 갑셀)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계단실, 승강기등을 따로 설치하여 독립된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함.

을설)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출입구는 계단실 및 승강 기 등의 수직동선을 201상의 복합용도가 동일하게 사 용하더라도 용도별로 총을 달리하여 배치하고 도원 서 건축물내부로 진입하는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 는 경우 수직동선/계단실 승간기과는 관계가 없음

질의의 경우는 (을셀)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, 용도 별로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지도서체계 등을 각츠어야 한 거인

- *오피스텔 건축기준(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22호 : 2004 6 1)
-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
-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, 욕조가 없을 것
- 각 사무구획별 노대(발코니)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
-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
- 온돌·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
- 바닥으로부터 높이 1.2미터 이하 부분에 개·폐가 기능한 청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

(자료제공 :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02-2110-8437)